##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62

발의연월일: 2021. 11. 26.

발 의 자:정청래·유정주·박 정

임오경 · 이상헌 · 강득구

이수진 • 양이원영 • 김승남

김영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문화재 관리와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반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문화재보호의 당위성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특히 국립공원 등에 위치한 문화재의 경우 특히 이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지원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 및 지자체 조례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고,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감면된 금액만큼을 국가가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9조제3항). 법률 제 호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을 "관람료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등을 위해 감 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	
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	
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	
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	
는 바에 따라 <u>지역주민 등에</u>	관람료를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	<u>다만, 국가 또</u>
다. <u>&lt;단서 신설&gt;</u>	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정문
	화재 관리 등을 위해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
	<u>원할 수 있다.</u>